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812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9일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 1. 주 문

-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가.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기준 5,182만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약 4,710만명, 2070년에는 약 3,71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구감소의 배경에 저출생 현상이 있음.
- 나. 저출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과격적인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임.
- 다. 이에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공주택 특별법」 등
- 나. 기타사항 :

## 4. 이 송 처

- 가. 국회
- 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최대 위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특히 출생률 저하는 인구감소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저출생 극복대책 마련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기준 5,182만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약 4,710만명, 2070년에는 약 3,71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 현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수 통계를 살펴보면, 1980년 86만 2천명이었던 것이 2023년 약 23만명으로 43년만에 약 73.4%나 급감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무려 380조를 투입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으며, 반전은 커녕 추락의 가속도만 더해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관료주의의 점진적,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뿐이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틈없이 일터로 내몰리는 맞벌이 부부들은 그동안 축적한 자산과 부부합산 소득이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초과된다는 이유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을 책임져 주지 않

는 한, 저출생 정책은 인구감소 대응 및 출생률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아친 후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기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생애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신혼부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개정하라!

둘째,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신혼부부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셋째, 정부는 자녀출생(예정) 가구와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예산을 전폭 지원하라!

2024. 4.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의 공급 대상 확대**

현 행	개정 건의안
<p>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생 략)</p> <p>② 공공주택사업자는 <u>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u>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u>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공주택사업자는 <u>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 가구, 다자녀가구</u>, 주거지원필요계층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다자녀 가구</u>,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대상 확대**

현 행	개정 건의안
<p>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③ &lt;생 략&gt;</p> <p>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다만,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u>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시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2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 ④ &lt;생 략&gt;</p> <p>&lt;신 설&gt;</p>	<p>제2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u>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u>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p>